



\* 이 감사결과는 감사당시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수감된 내용으로 감사이후 관계 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7년 면천면 자체종합감사 —

# 감사 결과 처분 내용

2017. 3.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 ① 농업보조금(다겹보온커튼 개선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회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민이 같은 특례 규정 제7조제1호의 [별표5]에 명시된 농·임업용 기자재를 구입 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3조의5(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르면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도 면천면과 당진시(농업정책과)에서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개선사업(시비 50%, 자담 50%)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를 미환급 대상으로 잘못 알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사업자인 9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원(예상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분에 대한 환급금 \*,\*\*\*,\*\*\*원을 환급 및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 처 분 요 구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에 대한 환급신청을 통해 보조금분에 대한 환급금 \*,\*\*\*,\*\*\*원을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 ② 조경공사 변경계약 부적정

-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1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면천면에서는 201\*.\*\*.\*\*. ♪♪♪♪♪ 조성공사를 ◎◎◎◎과 16,202천원으로 계약체결 후 201\*.\*\*.\*\*.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와 설계변경 시행결의를 하면서 사업비가 세출예산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201\*.\*\*.\*\*. 1,798천원이 증액된 18,000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총공사비가 예산액 30,000천원보다 604천원이 초과한 30,604천원

(관급자재비 12,604천원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③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및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시 지원대상자의 주소, 농어촌지역 거주 일치 여부, 농업인 여부, 국가기관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그런데도 면천면에서는 201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 학생에 대하여 매 분기별 학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신청인(보호자)의 자격(주민등록 기준 농어촌 지역 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동 지침에 정한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학자금(\*\*\*,\*\*\*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부적정하게 지급된 농업인자녀 학자금 \*\*\*,\*\*\*원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부적정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도 면천면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또는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지 않고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⑤ 지방세외수입금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미이행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방세외 수입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면천면에서는 미납된 지방세외수입금 \*\*건 \*,\*\*\*천원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지방세외수입금 미납 \*\*건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⑥ 농지전용 신고 및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부과

○ 면천면에서는 농지전용 신고 및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 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하여야 하고, 또한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 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함에도 등록면허세 \*건 \*\*\*천원을 미부과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미부과한 지방세(등록면허세) \*건 \*\*\*천원을 부과징수하고,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7] 건설공사 구조물 시공관리 소홀**

- 면천면에서 ☁☁☁☁ 농로연결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도서(공사시방서)에 의하면 암거 구조물의 슬래브 거푸집은 “설계압축강도의 90%이상 또는 콘크리트 타설 후 21일 이후” 에 제거하도록 작성하였으며, 「콘크리트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에서도 슬래브는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이상 또는 최소 14MPa이상(동바리 유지 시 책임기술자 승인 후 10℃ 이상에서 4일 이상)” 거푸집을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면천면에서는 본 공사의 암거구조물을 시공하면서 벽체와 슬래브 거푸집을 2016.10.22.까지 설치하고 10.22.자로 철근조립, 10.24일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2일(평균기온 17.6~17.8℃, 기상청자료)이 경과한 10.26.자로 거푸집을 해체하였음. 그 결과, 공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의한 거푸집 해체시기를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완성된 공사의 내구적으로 결함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시공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8] 주민숙원사업 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 면천면에서 ◆◆◆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에 의하면 L형 옹벽 설치 시 작업자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비계설치를 반영(156㎡)하였고, 활동방지기 콘크리트타설에 필요한 합판거푸집(24㎡)을 반영하였으나, 준공 검사원의 사진대지, 공사감독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비계는 전면(78㎡)만 설치하고, 합판거푸집은 시공하지 않았으며, ■■■■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사업

에서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L형측구 시공을 설계서의 규격 및 형상을 다르게 축소 시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등의 감액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총 2건의 사업에서 \*,\*\*\*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과다하게 지출한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㉑ 주민참여감독제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면천면에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 도로개설공사(추정가격 32,667천원)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지 않고 감독자만으로 감독하고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㉒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소홀**

○ 면천면에서는 본인이 아닌 자가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징구 후 발급해야 함에도 2014년 3월 부터 2017년 2월까지 \*\*건에 대하여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복지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㉞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 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럼에도 면천면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자동차 표지상태 변동현황 알림기능이 작동했음에도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 공문 발송 등을 통한 사실여부 확인을 통해 표지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자동차 표지상태 변동 현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㉞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부적정

-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월 15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과 생일이 속한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그럼에도 면천면

에서는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자 중 사망자에게 사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자로 사회복지과에 확정·보고하여 \*\*\*,\*\*\*원을 과오 지급 하였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자의 연고자 등에게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환수조치를 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과오 지급한 참전유공자 수당 \*\*\*천원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㉔ 당직근무 규칙 위반 및 청사 방법·방호업무 소홀**

- 「당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에 따라 본청 외의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기관은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유인경비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에 당직근무자는 20: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이후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경계를 설정하여 청사내 외의 방법·방호 조치를 취하고 자택에 대기하며 익일 08:00까지 등청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도 면천면에서는 최종 퇴청자가 감사대상 기간 중 10일을 무인전자경비장치의 경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퇴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근무규칙을 위반하여 청사 내외의 방법·방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임.

**❖ 처 분 요 구 ❖**

당직 근무 규칙을 준수하여 청사 내외의 방법·방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㉔ 공용차량 운행일지 및 정비점검일지 기록·관리 소홀**

-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공용차량을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점검·정비를 한 후에는

서울행정 차량관리시스템에 차량운행일지와 차량정비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그런데도 면천면에서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자동차 정기검사, 타이어 교체 등 관용차량을 점검·정비하였음에도 정비대장을 한 차례도 기록하지 않았고, 차량정비를 위해 관용차량을 운행한 날 중 19일은 운행일지 작성도 미이행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처분요구 ❖

공용차량 운행일지 및 정비일지 기록·관리 등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 四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확인 및 인감증명발급대장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위임장은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위임인의 신분증과 함께 진정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인감사고 시 문서감정의 대상이 되므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할 수 없으며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본인인 경우에는 무인 또는 서명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함.

그런데도 면천면에서는 4건의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한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1\*.\*\*.\*\*. 인감증명발급대장의 본인 서명(●●●)을 받지 않았으며, 지문의 양각이 나타나지 않는 불명확한 무인을 받는 등 인감증명발급대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처분요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확인 및 관리, 인감증명발급대장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㉔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주민등록표를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럼에도 면천면에서는 201\*년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를 실시하면서 면천면 ♣♣♣♣ \*\*-\* \*\* ▣▣▣ 외 19세대가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불일치자 임에도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 ㉕ 지역민방위협의회 미구성

-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민방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읍·면·동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읍·면·동협의회에서는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도 면천면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 현재 까지 읍·면·동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민방위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